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8,140,689	10,444,221
일반회계	335,444,050	10,063,322
특별회계	12,696,639	380,899
기타특별회계	12,696,639	380,8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423,594	252,708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97,183	2,91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406,940	12,208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507,014	45,210
복지기금특별회계	254,000	7,620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17,000	3,51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882,741	56,482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167	2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72,095,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400,000,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